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규모	
	전화번호	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차 대수	
	소재지		
주사무소	관할관청 주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 -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